

의안번호	제 157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5월 일 (제 300 회)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지원시설세 감면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5월 2일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

의안 번호	157
----------	-----

제출연월일 : 2011년 5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세액 감면으로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어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2010. 12월 ~ 2011년도까지 충청북도내에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물(건축물)에 대한 2011년도 과세분 지역자원시설세 100% 감면

3. 의안전문

- 감면세목 : 2011년도 과세분 지역자원시설세
- 감면율 : 100%
- 감면지역 : 2010. 12월 ~ 2011년도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충청북도 전역
- 감면대상 :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양축 농가 중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자의 가축시설물(건축물)

4. 참고자료

- 구제역 피해(살처분) 축산농가 현황 : [붙임 1]
- 구제역 피해(살처분)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 예상액 : [붙임 2]
-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행정안전부) : [붙임 3]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4]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인쇄 : 이상환 / 세정과 (2011-04-29 16:53:43)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

1.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시달하오니 지방세 관련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소·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농가로부터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재산세를 감면하되,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 협의 등으로 적의 추진하여 주시기,

3.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거나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유예 등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지원 관련 홍보 등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피해주민의 지방세 지원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기준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시장(세제과장), 서울특별시시장(세무과장), 부산광역시시장(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시장(세정담당관), 인천광역시시장(세정과장), 광주광역시시장(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시장(세정과장), 울산광역시시장(세정과장), 경기도지사(세정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세정과장), 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과장)

주무관 오정의 행정사무관 서정훈 지방세운영과장 전동흔 01/03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8 (2011. 01. 03.) 접수 세정과-38 (2011. 01. 03.)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1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941 전송 02-2100-4322 / ojuing55@mopas.go.kr / 비공개(3,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지원기준

2011.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구제역 피해 농가 지방세 지원기준

I. 지원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 (12.31. 기준) 5개시도 31개시군 2,385농가, 축사시설 145만㎡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12.28)됨에 따라, 지방세법령상 “재해”로 의제하여 지원

II. 지원내용

1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 5개시·도 31개시·군 2,385농가, 축사시설 145만㎡('10.12.31. 기준)

- 과세기준일 / 납기 : '11. 6. 1. / '11. 7. 16. ~ 7. 31

- 추진방법 :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세목, 범위 등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

※ 근거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공포·시행(2월 예상)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상반기 중 조속 추진

2 징수유예

- 대상세목 :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지된 세목
- 유예내용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
- 추진방법 :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유예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95조 ('10.12월 자동차세 등)

3 기한연장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 연장내용 : 취득세, 지방소득세의 납세자가 자신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납부기한을 연장
- 추진방법 :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3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9개월까지 재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Ⅲ. 지원방법

-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조치
 - 당해 시장·군수나 읍·면장이 발행하는 별첨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 징수유예, 감면 등 신청 시 신속하게 처리 지원

※ 다만, 자치단체장이 감면의 필요를 인정할 시 직권으로 감면조치 가능

Ⅳ. 행정사항

- 지자체별 구제역 재난대책본부와 협의, 축산농가의 피해실태 파악 후, 세부지원계획 마련 등 조치
 - 특히, 지방세 지원 관련 홍보 등 안내 철저
-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 요망

[붙임 4]

관련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46조 (행정예고)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만원 +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제147조(부과·징수)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 ※ 1) 제114조(과세기준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2) 제115조(납기) : 재산세 납기는 다음과 같다.
 - 토지(매년 9.16. ~ 9. 30.), 건축물(매년 7.16.~7.31.)
 - 주택(해당연도 부과세액의 1/2는 7.16.~7.31., 1/2는 9.16.~9.30)
- 3) 제116조(징수방법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고,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 발급
- 4)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직전년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4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5조(세율) 법 제146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만원 +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제16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8조(부과대상지역)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